

제주지방법원 2024. 4. 9 선고 2023가단598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원고로부터 2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6.28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1. 25.부터 위 가.항 기재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수일

별지